

## 반달가슴곰 피해에 대한 보상 만족도 연구<sup>1</sup>

김보현<sup>2\*</sup> · 김용근<sup>3</sup> · 양두하<sup>2</sup> · K.V. SKRIPPOVA<sup>4</sup> · 이경재<sup>3</sup>

## The Study on Satisfaction of the Damage Compensation Caused by the Released Asiatic Black Bear<sup>1</sup>

Bo-Hyun Kim<sup>2\*</sup>, Young-Geun Kim<sup>3</sup>, Doo-Ha Yang<sup>2</sup>, K.V. SKRIPPOVA<sup>4</sup>, Kyong-Jae Lee<sup>3</sup>

### 요약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한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이 유발한 피해에 대한 보상 만족도를 살펴보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보상을 받은 93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의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상 평균  $3.14\pm0.85$ 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보상만족도는 소득수준, 복원사업 찬성 여부, 보상금액, 보상절차 등의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방안에는 비교적 긍정적(평균  $3.3\pm0.9$ 점)이었으나, 다른 야생동물과 동일한 기준인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평균  $2.6\pm1.11$ 점)이었다.

주요어 : 지리산국립공원, 피해보상프로그램, 갈등관리, 설문조사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satisfaction with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released Asiatic Black Bears into the whole area of Jirisan National Park and to offer basic data for reasonable conflict management with local communit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 2007 to Dec. 2007 on 93 subjects who got their compensations for the bear damage from 2004 until 2007. The results stayed at a middl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roper damage indemnity program with as mean  $3.14\pm0.85$  points on the basis of 5 point scale. The satisfaction with compens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factors, such as income levels, whether to agree to restoration project, compensation money and compensation procedures. The compensation plan through the Animal Damage Compensation Consultation Committee was accepted positively(mean:  $3.3\pm0.9$ ); however, to the compensation plan for the 80% compensation of actual amounts of bear damage, was acknowledged negatively(mean:  $2.6\pm1.11$ ).

**KEY WORDS :** JIRISAN NATIONAL PARK, COMPENSATION PROGRAM, CONFLICT MANAGEMENT, QUESTIONNAIRE SURVEY

1 접수 4월 30일 Received on Apr. 30, 2008

2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Species Restoration Center, Korea National Park Service, Gurye, Jeollanamdo(542-853), Korea

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College of Urban Sciences, Univ. of Seoul(130-743), Korea

4 러시아 극동과학아카데미 우수리스크보호구 Ussuri Nature Reserve of Far East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named after Vladimir Komarov in Russia(kaiman@ml.ussuriisk.ru)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nasan929@gmail.com)

## 서 론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는 공동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추구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Edeny, 1981)을 말한다. 사회적 딜레마는 개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사회의 공동이익을 저해할 때 존재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와 같은 문제는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다(김용근, 1991).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조적 접근방법과 개별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구조적인 접근방법에는 관리대표자의 선출, 선택적 보상제도 및 자원의 소유나 관리를 개별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별적인 접근방법에는 직접대화와 홍보 및 교육적인 접근법이 포함된다(Edeny, 1981; 김용근, 1991).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로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제정)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와 함께 피해 예방 및 보상 규정을 두어 개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피해감정액의 70~80%, 최대 약 3~5백만원 수준에서 피해보상액을 책정하고 있다(환경부, 2006). 지리산권 5개 시·군 중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은 2006년부터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례군과 남원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며, 특히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 및 그 인근의 농작물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4). 이들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방법과 절차는 각국의 실태와 재정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2).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피해유발 동물의 서식밀도와 개체수 조절 등의 대책수립, 연구, 홍보,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환경부, 2006). 캐나다에서는 지방정부에 따라 피해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피해방지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는 1차적으로 농부의 책임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보상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연현상의 일부인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막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2). 미국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기후에 의한 피해와 같이 농부가 부담해야 할 불가피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피해보상과 피해방지시설물 설치지원은

주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을 하더라도 대부분 전액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Wagner *et al.*, 1997).

전문가들은 피해보상은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피해에 대한 농부의 참을성만 키워주는 일시적인 문제해소에 그칠 뿐이므로 곰의 피해유발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여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Olsen, 1991; Klenzendorf, 1997; Klenzendorf and Vaughan, 1999).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6)에서 피해보상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설치비 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상의 규모는 실 피해액의 최고 80% 선까지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렵제도 수입금을 피해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주민 재산피해는 공공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치된다 는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한봉지역에 2005년부터 피해방지시설(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다.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에 통보한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 조사 및 손해액을 평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원확보, 피해보상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방지 노력 미비, 등의 논란으로 인해 피해보상프로그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보상에 대해 관련 법규 검토, 해외의 피해보상프로그램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과정에서 자원보호의 공익성과 개인의 이해관계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피해보상방법(구조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평가 하고 환경부(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보상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대상지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이에 접해 있는 구례군, 남원시,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일원이다. 연구대상지에

Table 1. Questionnaire survey items

Item	Survey checkpoint	Scale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ex, Age, Education, Income, Resident, etc.	Nominal scale
Compensation(money)	Compensation(money)	Nominal scale
Restoration project of Bear	Attitude for the restoration project bear	Interval scale
Compensation satisfaction	Program, Money, Procedures, Period of handling	Interval scale
Compensation program	Operating the damage compensation committee, 80% level compensation of damage	Interval scale

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 6개체(♂3, ♀3), 2005년 7월 8개체(♂4, ♀4), 2005년 10월 6개체(♂4, ♀2), 2007년 10월 6개체(♂4, ♀2) 등 총 26개체의 반달가슴곰이 방사되었으며, 방사곰들로 인해 229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반달가슴곰을 최초 방사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방사한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은 당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피해보상을 받은 연구대상자는 총 102명이었으나 설문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93명의 설문지를 유효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득수준,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피해보상액을 파악하였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찬성여부와 피해보상에 대한 만족도 및 이와 관련된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5단계 어의구별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보험가입을 통한 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부(2006)의 연구결과로 제안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피해보상액은 피해감정액의 80%수준 보상방안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Table 1). 조사결과는 SPSS 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 결과 및 고찰

Table 2.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for respondents

Index	Category and Frequency(%)
Gender	Male(84.9), Female(15.1)
Age	30-39(4.3), 40-49(23.7), 50-59(28.0), 60-69(29.0), Over 70(15.1)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59.1), High school(26.9), University(14.0), More than University(0)
Income(10,000won)	Less than 99(14.0), 100~299(63.4), 300~499(9.7), More than 500(7.5), N/A(5.4)
Residence	Gurye-gun(43.0), Hadong-gun(0), Sanchung-gun(9.7), Hamyang-gun(15.1), Namwon-si(32.3)
Compensation(10,000won)	Less than 99(31.2), 100~299(51.6), 300~499(8.6), 500~999(4.3), More than 1,000(4.3)

## 1. 응답자 특성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 설문조사에 응한 93명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분포는 40대 23.7%, 50대 28.0%, 60대 29.0%는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30대 이하가 4.3%인 반면 70대 이상이 15.1%로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59.1%로 비율이 높았으며, 대졸이상이 14.0%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100만원~300만원사이가 63.4%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14.0%,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17.2%를 차지하였다. 거주지는 피해발생이 집중된 구례군 43.0%, 남원시 32.3%로 2개 지역에 편중되었다. 보상금액은 100만원~299만원 사이가 51.6%, 1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자가 31.2%를 차지하였고, 1,000만원 이상의 피해자가 4.3%이었다.

## 2.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의견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대상자들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 찬성 여부를 5점 척도(1: 매우 찬성 ~ 5: 매우 반대)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복원사업에 '반대' 48.4%, '찬성' 32.3%, '보통' 19.4%으로 5점 척도상 평균  $2.78 \pm 0.99$ 점으로 중간 값(3점)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Table 3. T-test between group for attitude about bear restoration project

Item	Independent Variables	N	Mean	SD	t	sig
Age	Over 60	41	2.9756	0.93509	1.651	0.102
	Less than 60	52	2.6346	1.02954		
Education	Over high school	38	2.7368	0.97770	-0.384	0.702
	Less than high school	55	2.8182	1.02000		
Income	Over 3million won	21	2.7143	1.00712	-0.367	0.715
	Less than 3million won	72	2.8056	1.00195		
Compensation	Over 1million won	64	2.8125	1.02159	0.394	0.695
	Less than 1million won	29	2.7241	0.95978		

나타났다. 이는 2006년 6월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결과('찬성' 46.1%, '반대' 28.2%)와 상반되는 결과로 복원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원사업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이윤추구와 공공이익 간의 갈등, 즉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공공목적의 명분이 확실함에도 개인적인 손해와 연관되어 있어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해 피해보상과 같은 구조적인 접근방법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개별적인 접근방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 학력, 수득수준, 보상액의 차이에 따라 집단간 평균의 차이에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나 유의성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Table 3). 이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연령, 교육수준, 수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 방사된 지 7개월(생후 1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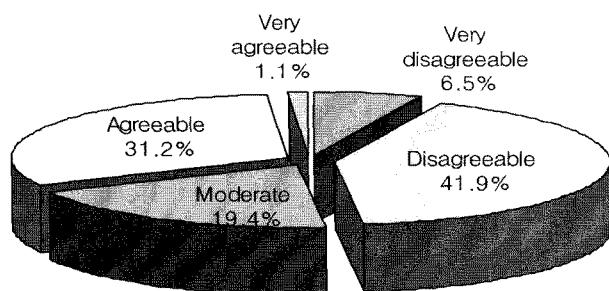


Figure 1. Attitude toward restoration project for bears

후인 2005년 5월 첫 피해를 발생시키기 시작하여 2007년 12월까지 총 229건의 피해를 발생시켰다(Table 4). 연도별 피해 건 수는 2005년 43건에서 2006년 1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7년에는 25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중 꿀 피해가 2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반달가슴곰이 꿀을 좋아하고, 꿀을 재배하는 한봉지를 지리산 해발 800m 이하의 숲 속 또는 숲 경계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보상금액, 보상절차, 소요시간 등 각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평가토록 하여 각 단계별 응답비율과 평균값을 계산하였다(Table 5).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만족 43.0%, 불만족 28.0%, 보통 29.0%로 5점 척도상 평균  $3.14 \pm 0.85$ 점으로 중간 값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보상하고 있으나 피해에 따른 반감과 보상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각 요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상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5.5%, 불만족 28.0%, 보통 36.5%로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다소 높아 5점 척도상 평균  $3.08 \pm 0.84$ 점 이었다. 손해액 100%를 보상해주고 있지만 보상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불만족 한다는 의견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3.3%, 불만족

Table 4. The status of damage cases caused by released bears

Year	Number of damage cases			Compensation (1,000won)
	Honey	Other	Total	
Total	221	8	229	316,245
2005	42	1	43	36,140
2006	155	6	161	246,510
2007	24	1	25	33,595

Table 5. Compensation satisfaction about bear damage

Item	Compensation Program(%)	Money(%)	Procedures(%)	Period of handling(%)
Very dissatisfactory	1.1	1.1	2.2	5.4
Dissatisfactory	26.9	26.9	35.5	55.9
Moderate	29.0	36.5	29.0	21.5
Satisfactory	43.0	34.4	31.1	16.1
Very satisfactory	-	1.1	2.2	1.1
Mean(5 scale)	3.14	3.08	2.96	2.52
SD	0.85	0.84	0.92	0.87

Table 6. T-test for satisfaction of compensation program

Item	Independent Variables	N	Mean	SD	t	sig
Age	Over 60	41	3.1951	0.81300	0.552	0.582
	Less than 60	52	3.0962	0.89134		
Education	Over high school	38	3.1842	0.89610	0.415	0.679
	Less than high school	55	3.1091	0.83161		
Income	Over 3million won	21	3.5714	0.67612	2.721	0.008*
	Less than 3million won	72	3.0139	0.86388		
Compensation	Over 1million won	64	3.0938	0.86774	-0.770	0.443
	Less than 1million won	29	3.2414	0.83054		

\* p≤0.01

37.7%, 보통 29.0%로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 5점 척도상 2.96±0.92점으로 이었다. 이는 피해신고(주민)-현장조사(공단)-보험사통보(공단)-현장조사 및 손해사정(보험사)-보상액 합의-보상 순으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17.2%, 불만족 61.3%, 보통 21.5%로 5점 척도상 평균 2.52±0.8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발생에서부터 보상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의 절차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 학력, 수득수준, 보상액에 따라 집단간 평균의 차이에 유의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보상금액에 따라 집단간 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6). 이는 보상만족도가 연령, 교육수준, 보상받은 금액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현재의 보상프로그램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의견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부(2006)에서 제시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과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설치를 통한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답자의 50.5%가 찬성, 17.2%가 반대, 보통 32.3%로 5점 척도상 평균 3.32±0.90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피해감정액의 80% 수준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31.2%, 반대 59.5%, 보통 19.4%로 5점 척도상 평균 2.69±1.11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Table 7).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심리는 있지만

Table 7. Attitude toward new compensation program for bear damage

Item	Organization of the committee	80% level of compensation
Very disagreeable	4.3	15.1
Disagreeable	12.9	34.4
Moderate	32.3	19.4
Agreeable	47.3	29.0
Very agreeable	3.2	2.2
Mean(5 scale)	3.32	2.69
SD	0.90	1.11

Table 8. T-test about new compensation program for bear damage

Item	Independent Variables	N	Mean	SD	t	sig
Organization of the committee (%)	Age	Over 60	41	3.4390	0.89579	1.111 0.270
		Less than 60	52	3.2308	0.89914	
	Education	Over high school	38	3.3158	0.98927	
		Less than high school	55	3.3273	0.84007	-0.060 0.952
	Income	Over 3million won	21	3.0952	1.04426	
		Less than 3million won	72	3.3889	0.84845	-1.323 0.189
80% level of compensation	Comption	Over 1million won	64	3.2500	0.92582	
		Less than 1million won	29	3.4828	0.82897	-1.159 0.249
	Age	Over 60	41	2.8293	1.22275	
		Less than 60	52	2.5769	1.01646	1.087 0.280
	Education	Over high school	38	2.2895	1.01096	
		Less than high school	55	2.9636	1.10493	-2.993 0.004*
	Income	Over 3million won	21	2.5238	1.24976	
		Less than 3million won	72	2.7361	1.07459	-0.767 0.445
	Comption	Over 1million won	64	2.4844	1.02341	
		Less than 1million won	29	3.1379	1.18696	-2.712 0.008*

\* p≤0.01

피해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주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피해보상금을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연령, 교육수준, 수득수준, 보상금 등 각 요인별 집단간 평균 차이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중학교 이하/고등학교 이상)과 보상금 액(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과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은 계층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으며,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은 피해 주민들은 피해보상 요율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80% 수준의 보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 5. 상관관계 분석

피해보상 만족도에 관련된 설문 항목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Table 9).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은 수득수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찬성 정도, 보상금액 만족도이었으며, 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은 보상절차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은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나타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보상요율의 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상프로그램에 만족도와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현재 보상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에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고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교육수준 및 보상금과는 5%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상금액을 많이 받았던 계층일수록 보상요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은 80% 수준에서 보상금의 책정하는 항목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을 뿐 다른 만족도 요인과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수득수준은 피해보상프로그램 만족도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questionnaire survey items

	F1	F2	F3	F4	F5	F6	F7	F8	F9
F2	.004								
F3	.114	.014							
F4	-.030	-.029	.042						
F5	.067	.292**	.066	.392**					
F6	-.033	.240*	.001	.319**	.411**				
F7	-.078	.146	.084	.191	.229*	.188			
F8	-.177	.129	.032	.017	.107	.260*	.341**		
F9	-.041	-.174	.053	.102	.195	.011	.017	.174	
F10	-.255*	-.122	-.212*	.154	.206*	.107	.125	.056	.330**

\* p ≤ 0.05, \*\* p ≤ 0.01

F1: Education, F2: Income, F3: Compensation by damage, F4: Agreeable for restoration project, F5: Satisfaction about compensation program, F6: Satisfaction about money, F7: Satisfaction of procedure, F8: Satisfaction of time, F9: Organize a commission, F10: Compensation of 80% level about damage

## 결 론

본 연구는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회적 딜레마 즉, 사회심리학적 갈등관계로 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의 보상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에 반달가슴곰을 최초 방사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은 93명을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상 평균 3.14±0.85점으로 중간 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산 피해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만족도가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각 요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상금액 평균 3.08±0.84점, 보상절차 평균 2.96±0.92점,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 2.52±0.87점으로 각 요인이 전체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각 요인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수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보상금액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평균 3.32±0.90점으로 새로운 제도에 도입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 평균 2.69±1.11점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결과 새로운 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은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피해에 대한 농부의 참을성만을 키워주는 일시적인 문제해소에 그칠 뿐이므로(Klenzendorf, 1997; Olsen, 1991), 방사한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도 피해자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 29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고시(환경부고시 제 2008-42호)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전체 비용의 60%) 이내,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원(피해산정액의 80% 이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그렇지만 방사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 방지 및 보상은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른 야생동물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 만족도가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복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주민 스스로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야생동물 피해와 마찬가지로 피해보상금을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한 반달가슴곰을 야생동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확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방사된 반달가슴곰을 야생동물로 인정하고 지자체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위원회 운영시 방사곰에 의한 피해를 포함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등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보상기준 수립

및 환경부, 지자체간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공익차원의 사업 추진 정책과 개인 재산권 보호간의 갈등이 대립하고 있는 측면에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 현상(Edeny, 1981; 김용근, 1991)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으나 만족도가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복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피해주민이 많은 것은 주민에 대한 이해와 홍보 등 갈등관리를 위한 개별적 접근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판단된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위한 피해보상체계 개선 등 구조적인 접근방법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설득, 교육, 홍보 등 개별적 접근방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인용문헌

국립공원관리공단(2002) 국립공원야생동물의 적정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52쪽.

- 국립공원관리공단(2004) 반달가슴곰 시험방사 결과보고서. 167쪽.
- 국립공원관리공단(2006) 종복원사업관련 국민의식조사. 73쪽.
- 김용근(1991) 자연휴양자원관리를 위한 Social Dilemma 해소방안. 한국임학회지 80(3): 287-295.
- 환경부(200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194쪽.
- Edney, J.H.(1981) Paradoxes on the commons : Scarcity and the problem of equal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1108-1115.
- Klenzendorf, S.A.(1997) Management of Brown Bears(*Ursus arctos*) in Europe. Master thesis of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13pp.
- Klenzendorf, S.A. and M.R. Vaughan(1999) An overview of brown bear management in six european countries. Ursus 11: 163-178.
- Olsen, L.(1991) Compensation: giving a break to ranchers and bears. Western Wildlands 1: 25-29
- Wagner, K.K., R.H. Schmidt and M.R. Conover(1997) Compensation programs for wildlife damage in North America. Wildlife Society Bulletin 25: 312-319.